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40호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시장이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고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
- 비용추계서 1부.(붙임)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로 한다.

② 제1항은 보호자와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

② 1항의 셋째 이후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지급한다.

③ 신청절차 및 지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의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영유아보육법 ☐ 제34조(무상보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①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해 매년 시장이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 부모부담보육료
- ②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매년 1월1일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된 만3세 이상인 영유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4조(지원내용)
- 보조의 범위 : 다자녀가정에 부모부담보육료의 경제적 지원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시비 100%

나. 추계 결과

다자녀가정의 셋째아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7년 1,009,728천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5,505,120천원이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다자녀가정 셋째아 차액 보육료 지원액

(단위 : 명, 원)

연령	아동수	부모부담보육료	비고
만3세	576	74,000	아동수 : 2016년말 기준 부모부담보육료 : 2017년기준
만4세	380	60,000	
만5세	312	60,000	

○ 연도별 추계비용

(단위 :천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1,009,728	1,055,376	1,101,024	1,146,672	1,192,320	5,505,120

<비용산출근거>

* 2017년도 : 아동수 × 2017년 부모부담보육료 × 12월

* 2018년~2021년 : 매년 부모부담보육료 인상분 3,000원(1%)

적용하여 산출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최 재 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다자녀가정 셋째아이 보육료 (부모 부담분)	1,009,728	1,055,376	1,101,024	1,146,672	1,192,320	5,505,120
	소계	1,009,728	1,055,376	1,101,024	1,146,672	1,192,320	5,505,12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009,728	1,055,376	1,101,024	1,146,672	1,192,320	5,505,120
	일반회계	1,009,728	1,055,376	1,101,024	1,146,672	1,192,320	5,505,12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